

의안번호	2207856
의 퇴 인	조경태 의원
회 답 일	2025. 4. 21.
추계번호	25B060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수경재배(水耕栽培) 방식을 포함함]으로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함)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수경재배(水耕栽培) 방식을 포함함]을 활용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함)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함 ※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의 농업 형태를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에 포함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Organic)의 정의에 수경재배 방식 등을 포함(안 제2조)

-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Organic)의 정의에 수경재배 방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수경재배 농산물 등이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¹⁾을 받을 수 있게 됨
- 현행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인증은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²⁾(이하 “무농약 인증”이라 함)과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이하 “유기 인증”이라 함)이 있는데, 현재 기준에 따르면 수경재배 농산물은 무농약 인증은 받을 수 있으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유기(Organic)의 정의상 유기 인증은 받을 수 없음
 - 예외적으로,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콩나물 등)의 경우 수분 외에 외부 투입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식물공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유기 인증 실시 중

[표 2] 유기 및 무농약 인증

구 분	유기	무농약
일반기준	○ 경영기록의 작성 보관 (최근 2년) ○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병행불가 ○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2년마다)	○ 경영기록의 작성 보관 (최근 1년) ○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병행불가 ○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2년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구 분	유기	무농약
재배포장, 용수, 종자	○ 재배포장 오염우려 없을 것 － 합성농약성분 0.01mg/kg 이하일 것 ○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비옥도 관리 ○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마련 ○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이 없을 것 ○ 재배포장은 처음 수확하기 전 3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칠 것(전환기간 동안 유기방식으로 재배) ○ 버섯류, 싹을 틔워 직접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 채소의 재배 배지 － 합성농약성분 0.01mg/kg이하일 것 － 배지의 조성이 산림,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화학비료 성분 배지조성 불가) ○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생육기동안 유기방식으로 재배된 것	○ 재배포장 오염우려 없을 것 － 합성농약성분 0.01mg/kg 이하일 것 ○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비옥도 관리 ○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마련 ○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이 없을 것 ○ 재배포장은 전환기간 없음 ○ 버섯류, 싹을 틔워 직접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 채소의 재배 배지 － 합성농약성분 0.01mg/kg이하일 것 ○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한 번의 생육기동안 무농약 방식으로 재배된 것
재배방법	○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불가 ○ 돌려짓기(윤작) 필수 ○ 가축분뇨 퇴·액비는 유기축산농장, 경축순환농장, 무항생제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 사용, 합성농약은 사용불가 ○ 돌려짓기(윤작) 권장 ○ 가축분뇨 퇴·액비는 일반농장 유래한 것도 사용가능
생산물 품질관리	○ 청결유지, 외부오염 방지 ○ 다른 인증 및 일반농산물과 구분관리 ○ 병·해충관리를 위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 ○ 비의도적 원인으로 합성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시 MRL의 1/20이하 이거나 MRL이 없는 경우 0.01mg/kg	○ 청결유지, 외부오염 방지 ○ 다른 인증 및 일반농산물과 구분관리 ○ 병·해충관리를 위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 ○ 비의도적 원인으로 합성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시 MRL의 1/20이하 이거나 MRL이 없는 경우 0.01mg/kg
기타	○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종자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 토양을 기반하지 않는 농산물은 수분 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물질도 투입이 금지됨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아님	○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배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가 유기 또는 무농약 －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국내산으로 잔류농약은 불검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기 인증 건수는 9,913건(24,287농가), 무농약 인증 건수는 16,424건(24,381농가)이었고, 무농약 인증 건수 중 수경재배와 관련이 있는 건수인 양액재배³⁾(448건), 수경재배(119건), 아쿠아포닉스⁴⁾(33건) 등은 600건임

[표 3] 최근 5년간 유기 인증 등 건수: 2020~2024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증건수 (농가수)	유기	8,102건 (23,750농가)	8,872건 (25,362농가)	9,624건 (24,906농가)	9,546건 (24,072농가)	9,913건 (24,287농가)
	무농약	20,333건 (35,499농가)	18,915건 (29,992농가)	17,371건 (25,816농가)	16,954건 (25,448농가)	16,424건 (24,381농가)
	소계	28,435건 (59,249농가)	27,787건 (55,354농가)	26,995건 (50,722농가)	26,500건 (49,520농가)	26,337건 (48,668농가)

주: 1개의 인증 건에 복수의 농업인이 단체인증을 통해 인증받는 경우가 있어 인증 건수와 인증 농가수에 차이 발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4] 2024년 유기 인증 등 건수 세부 현황

구분			2024년
인증건수 (농가수)	유기	소계	9,913건 (24,287호)
		수경재배 ⁵⁾	11건 (11호)
		토양재배 등	9,902건 (24,276호)
	무농약	소계	16,424건 (24,381호)
		양액재배	448건 (448호)
		식물공장	5건 (5호)
		수경재배	119건 (119건)
		식물공장	56건 (56호)
		아쿠아포닉스	33건 (33호)
		토양재배	15,824건 (23,781호)
	합계		26,337건 (48,668호)

주: 1개의 인증 건에 복수의 농업인이 단체인증을 통해 인증받는 경우가 있어 인증건과 농가수에 차이 발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3)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의 뿌리에 필요한 영양분이 녹아 있는 물(양액)을 공급하여 작물을 키우는 재배 방식
- 4)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를 결합한 친환경 농업 시스템
- 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수경재배 유기인증 건수는 콩나물 등과 같이 토양을 기반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인증 건수임

- 현행법 제56조⁶⁾는 유기 인증 또는 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⁷⁾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표 5]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관련 비용 단가 현황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증 수수료 ¹⁾	신청비	23,996	25,099	26,610	26,760	27,043
	출장비	12,000	12,000	14,000	14,000	14,000
	심사관리비	157,000	157,000	157,000	157,000	157,000
분석비용 ²⁾	토양분석 (5년 1회)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용수분석 (5년 1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농약안전성분석 (매년)	150,000	150,000	250,000	250,000	250,000
합계		378,996	380,099	483,610	483,760	484,043

주: 1) 인증신청비는 건당 50천원 이내,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1회 출장에 5농가 심사로 산출), 심사관리비는 1~4명 단체 기준인 1인당 157천원 적용

2) 분석비용은 토양분석과 용수분석은 5년에 1회 실시(1회 분석비용: 토양 80천원, 용수 100천원), 농약안전성분석은 '22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성분 수 증가(320성분 → 463성분)로 분석비용 증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농의 정의에 수경재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할 경우, 수경재배 농산물 등에 대한 유기 인증이 가능해져 유기 인증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수수료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수경재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유기농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 인증의 기준을 알 수 없고,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배 방식 및 농가의 수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준 유기 인증 중 수경재배 건수, 무농약 인증 중 양액, 수경, 아쿠아포닉스 등의 건수를 기준으로 해당 건수가 개정안 시행 이후 유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억 8,100만원으로 추산하면서, 정확한 추산을 위해서는 양액·수경재배하는 농가 중 ①스마트농업에 해당하는 농가와, ②이들 농가 중 친환경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수, ③인증희망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첨부 [참고자료 2]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현황

연번	인증기관명	소재지	연번	인증기관명	소재지
1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호주(퀵즐랜드)	25	위씨트인증원	강원 원주
2	Kiwa BCS Oko Garantie GmbH	독일 (뉘른베르크)	26	유기농진흥원	전남 담양
3	강원대학교	강원 춘천	27	유기식품평가원	광주 북구
4	전국에코인증원	충북 충주	28	인증포럼	서울 송파구
5	경상국립대학교	경남 진주	29	자연들농식품인증원	전북 익산
6	국립목포대학교	전남 무안	30	전남대학교	광주 북구
7	국립순천대학교	전남 순천	31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 나주
8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경북 상주	32	제이케이 친환경	광주 동구
9	그린인증원	광주 북구	33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시
10	글로벌농식품인증원	대구 북구	34	지리산인증	전북 남원
11	녹색친환경	경남 밀양	35	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광주 남구
12	농식품인증관리원	경기 수원	36	충북대학교	충북 청주
13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광주 북구	37	친환경농업연구원	충남 아산
14	비씨에스코리아	충남 천안	38	친환경인증센터	전남 순천
15	산들친환경연구소	전북 순창	39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서울 성동구
16	성농	전북 완주	40	케이농식품인증센터	서울 노원구
17	양평친환경인증센터	경기 양평	41	토지글로벌닉스	광주 서구
18	에버그린농우회	경북 성주	42	하동녹차연구소	경남 하동
19	에코리더스인증원	서울 강남구	43	한국농산업인증원	광주 북구
20	예농	경남 진주	44	한국유기농인증원	경기 용인
21	오가닉티앤씨	충남 세종	45	한국작물연구소	전남 담양
22	온누리친환경	충남 천안	46	한솔농림수산물인증센터	제주시
23	우리농인증원	경남 거창	47	해진친환경인증센터	광주 광산구
24	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경북 울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참고자료 2]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추계 의견

[표] 농림축산식품부 추산 추가재정소요(추정액):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증대상 수경재배 유기식품등 농가(또는 식품등) 수(A, 호 또는 건)	686	720	756	794	834	3,789
1농가당 인증비용 (B, 백만원/개(또는 백만원/건))	0.50	0.51	0.52	0.53	0.55	
추가재정소요(C=A×B, 백만원)	340	366	394	424	457	1,981

주: (농가수) 유기인증 건 중 수경재배 16건, 무농약인증 중 양액재배 449, 수경 129, 아쿠아포닉스 28 건(23년말 자료)

- 매년 5% 성장을 가정하고 농가수 산출

(비용) 최근 5년 인증수수료, 분석비용을 기초로 연평균 증가율(2.5%) 계산하여 반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최근 5년(2020~2024)간 친환경 인증 신청에 소요된 비용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증 수수료*	신청비	23,996	25,099	26,610	26,760	27,043
	출장비	12,000	12,000	14,000	14,000	14,000
	심사관리비	157,000	157,000	157,000	157,000	157,000
분석비용**	토양분석 (5년 1회)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용수분석 (5년 1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농약안전성분석 (매년)	150,000	150,000	250,000	250,000	250,000
합계		378,996	380,099	483,610	483,760	484,043

주: * 인증신청비는 건당 50천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1회 출장에 5농가 심사로 산출), 심사관리비는 1~4명 단체 기준인 1인당 157천원으로 산출

** 분석비용은 토양분석과 용수분석은 5년에 1회 실시(1회 분석비용: 토양 80천원, 용수 100천원), 농약안전성분석은 '22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성분 수 증가(320성분 → 463성분)로 분석비용 증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